



부 산 고 등 법 원

창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창원)2024누11061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정○○
피고, 항소인 ○○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
제 1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1334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22. 원고에게 한 취득세 7,990,182,082원, 지방교육세 799,018,210



원, 농어촌특별세 399,509,14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중 마항의 '2023. 8. 1.'을 '2023. 7. 20.'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피고

산업단지 내 공장 설립촉진이라는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의 '건축'은 신축 또는 신축에 버금가는 정도의 증축으로, '취득'은 승계취득을 제외하는 것으로 각 해석해야 하고, 이 사건 조항의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규모 증축만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취득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당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목적도 없었으



로, 이 사건 조항의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사건 조항은 건물의 경우에는 승계취득 한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실제로 증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피고는 이 법원에서 이 부분 각 주장을 추가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3행부터 제7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조항의 '건축'과 '취득'에 소규모 증축과 승계취득이 포함되는지

가) 이 사건 조항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 본문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는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문언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항의 '건축'은 '증축'을 포함하고, '취득'은 '승계취득'을 포함한다.

나) 이 사건 조항이 제정되기 이전에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규정하



였던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는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의 대상으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 등으로 한정하였다가 위 개정 이후 이를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조항의 '건축'이 '증축'을 포함하고, '취득'은 '승계취득'도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체	대상
위 개정 전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제외), 위 토지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
위 개정 이후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	취득하는 부동산

다) 산업단지 내에 산업시설의 유치·확충이라는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승계취득 후 소규모의 증축을 한 경우까지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조항의 조세감면요건을 문언과 다르게 축소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라)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의 '건축'에는 '소규모 증축'이 포함되고, '취득'에는 '승계취득'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후 소규모의 증축을 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피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조항은 건물의 경우에는 승계취득 한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이 그 적용대상을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를 건물로 축소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의 적용대상에 승계취득 한 건물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가 이 사건 조항의 '건축하려는 자'에 해당하는지

원고가 2016. 4. 29. 산업단지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이후 2016. 7. 15.부터 2018. 9. 12.까지 7차례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1, 14,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10. 29. 첫 번째 증축(공기 BG 옥외변전실 신축 및 스펀들직 단열보강 공사), 2016. 4. 29. 두 번째 증축(K공장 창고 증축) 및 세 번째 증축(외자창고 야외창고 확장 및 보수)이 각 계획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에 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 사건 조항이 실제로 증축이 이루어진 토지 및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피고는 이 법원에서 이 부분 주장을 추가하였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시 ○○구 I, J 각 토지 및 그 지상건물(기숙사 등 후생복지시설, 주차장)을 취득하고, 위 각 토지 및 그 지상건물 부분에 관하여는 증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의 산업용 건축물 등은 공장 건물, 그 부대시설 및 그 부지를 모두 포함하고[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16. 5. 3. 대통령령 제27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호 등 참조], 공장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축이 이루어진 이상 그 일부분인 위 각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증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



우므로, 위 각 토지 및 그 지상건물 부분에 관하여도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2016. 4. 2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항 및 구 ○○○도 도세 감면 조례(2016. 11. 3. ○○○도 조례 제420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호에 의하여 그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가 경감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조항 등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 등의 감면을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

판사 최○○

판사 서○○